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11.22.~1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3부터 별표 4”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따른다.

관세율표 번호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길라(<i>Anguilla</i>)속] 3.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0301	99	기타 1. 돔 나. 기타 2. 농어 나.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28%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멸치		

[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리스(*Trachurus*)속], 출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꿩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데(<i>Istiophoridae</i>)].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9	기타	꿩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6	브레그마세로티데(<i>Bregmacerotidae</i>)과·유클리티데(<i>Euclichthyidae</i>)과·가디데(<i>Gadidae</i>)과·마크로우리데(<i>Macrouridae</i>)과·멜라노니데(<i>Melanonidae</i>)과·메르루치데(<i>Merlucciidae</i>)과·모리데(<i>Moridae</i>)과·무라에놀레피디데(<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4%

0303	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22%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3	69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는 제외한다]	22%				2.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2. 오징어		
0306	9	기타					가. 오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속·로리고(<i>Loligo</i>)속·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속·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속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306	95	새우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i>Pandalus</i>)속·크란곤 크란곤(<i>Crangon crangon</i>)](염장이나	32%			나. 기타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709	5	버섯과 송로(松露)						
0709	54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1902	19	기타 2.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i>Auricularia</i>)속], 젤리균류[트레멜라(<i>Tremella</i>)속], 송로(松露)						
0712	34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						

4412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 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	단판적층재(LVL)		
4412	4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	각 플라이(ply)가 6밀	10%

		(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4412	9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412	9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1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